

행정처분의 기준(제2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로 한다. 다만,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- 1)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2호	지정취소		
다.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41조제1항제3호	개선명령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
라.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	법 제41조제 1항제4호	개선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	------